

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‘고위험임산부 가사돌봄 지원’의 신청대상 및 신청거주기간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 서비스 수혜대상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‘임산부’를 ‘임신부’로 변경함(안 제1조).
- 나. 서비스 신청대상을 ‘고위험임산부’에서 ‘임신부’로 확대하고, 서비스신청거주기간요건을 ‘1년 이상’에서 ‘6개월 이상’으로 완화함(안 제3조의2).
- 다. 그 밖에 띄어쓰기, 오타자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” 등에 따라 조례 체계상 미비한 내용 등을 정비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-3396-8157 FAX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임산부” 를 “임신부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범위 내” 를 각각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 “(고위험 임산부의 지원)” 을 “(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고위험 임산부의” 를 “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” 로 한다.

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” 를 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” 로, “거주중” 을 “거주 중” 으로, “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” 를 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중구” 라 한다)” 를 “구” 로, “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” 을 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” 으로, “경과해야” 를 “지나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” 을 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4항 중 “중구 관내” 를 “구” 로, “거구중” 을 “거주 중” 으로 한다.
제6조제1항의 단서 중 “다만 제4조 제2항” 을 “다만, 제4조제2항” 으로,
“중구” 를 “구” 로, “경과한” 을 “지난” 으로 한다.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청시” 를 “신청 시” 로 한다.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
중 “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” 을
“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원여부” 를
“지원 여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출생신고시” 를 “출생신고 시”
로 한다.
제9조 중 “별지 제2호서식을” 을 “별지 제2호서식을,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<u>임산부</u> 및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신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지원기준)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</p> <p>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받는 <u>범위</u> 내에서 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의2(<u>고위험 임산부의 지원</u>) ① <u>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의2(<u>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</u>) ① <u>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<u>고위험 임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유산, 조산, 사산,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</u> 2. <u>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</u> 3. <u>고혈압, 당뇨병, 갑상선질환, 심장병, 신장병,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</u> 4. <u>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</u> 5. <u>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</u> <p>③ 제1항에 따른 <u>고위험 임신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</u>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(이하 “지원</p>	<p><u>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----- <u>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대상자”라 한다)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<u>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</u> 외국인도 포함한다.</p> <p>②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<u>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중구”라 한다)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</u> 지원 대상이 된다.</p> <p>③ 다만, 제1항, 제2항 모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<u>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</u>라야 한다.</p> <p>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산축하용품의 용도에 따라 <u>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임신부와 출생신고</u>를 한 모든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.</p> <p>제6조(지원신청)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</p>	<p>----- ----- <u>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</u>----- ----- <u>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구----- ----- ----- <u>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</u>----- ----- ----- <u>지나야</u> -----.</p> <p>③ ----- 구----- -----<u>되어 있는</u>----- --.</p> <p>④ ----- 구----- ----- <u>거주 중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지원신청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<u>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</u>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<u>지원여부</u>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(다만, 확보된 예산이 없을 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출산축하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<u>출생신고시</u>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대장 등 비치)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현황 <u>별지 제2호서식</u>을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<u>다음 달 5일까지</u> <u>구청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지원</u> <u>여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출생신고시</u> -----.</p> <p>제9조(대장 등 비치)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 <u>을,</u> ----- ----- -----.</p>